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43 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전현희·홍기원·이학영

박정현 · 김동아 · 한준호

박용갑 • 김영환 • 추미애

황정아 • 윤준병 • 박주민

김 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·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보호기간"이라 한다)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, 대통령지 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 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,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(안 제17조제1항), 대통령기록관의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 2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중 "관리"를 "관리 및 공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 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	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)
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	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	
록물(이하 "대통령지정기록물"	
이라 한다)에 대하여 열람·사	
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	
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	
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(이하	
"보호기간"이라 한다)을 따로	
정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대통령이</u>
	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경
	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
	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
	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
	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2(대통령 궐위 시 대통	제20조의2(대통령 궐위 시 대통
령기록물 <u>관리</u>) ①·② (생	령기록물 <u>관리 및 공개</u>) ①·
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
	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
	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

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다.